

# 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<http://www.seo.incheon.kr/>

선

기관의장

람

제1975호 2026.2.6.(금)

차 례

고 시

○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 고시 제2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— 1

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 고시 제2026-2호

##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

『국민건강증진법』 제9조제5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
2026. 2. 6.

인천광역시 서구보건소장

### 1. 지정취지

공동주택 복도, 계단, 엘리베이터,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아파트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,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

### 2. 지정내용

- 공동주택 명 칭 : 청라동양엔파트2차아파트
- 공동주택 소재지 : 인천광역시 서구 솔빛로 13
- 금연구역 지정번호 : 제 93호
- 금연구역 지정범위(전체) : 복도, 계단, 엘리베이터, 지하주차장
- 금연구역 지정일자 : 2025년 02월 06일

### 3. 금연구역 내 흡연단속

- 단속 개시일 : 2026년 5월 7일부터
- 과태료 금액 : 5만원

4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(☎032-718-052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